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를 등기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2차에 거쳐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7. 23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



1. 건 명 :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7조, 제12조,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김주○	1999.3.9	처분사전통지 (의견제출통지)	2024.2.6.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2024.3.19.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민취업지원 제도 서비스 진행을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실	국민취업지원제 취업지원(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) 종료 및 종료일로부터 3 년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참여제한	폐문부재	전북 익산시 인북로66길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4. 7. 23.~ 2024. 8. 5.(14일간)
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김현미(063-840-65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